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062호)	이양수의원	2024.10.30.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524호)	이양수의원	2024.11.13.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01.0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17.)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항만시설에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시설 설치 시 해석상 혼선이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저탄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중립으로 전환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형시설장비의 약 32%가 제조 후 2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쉽 언로더의 붐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진단·점검할 제도가 없고, 민원 등으로 사용을 일시 중지한 시설장비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시설장비의 점검·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항만시설의 범위와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등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사용의 일시 중지·재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생산·저장·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하고,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나.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일시 중지 기간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용재개검

사를 신설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33조).

다. 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형시설장비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함(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1항제3호).

라.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정밀안전진단등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안 제83조제1항제4호의2,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7) 중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으로,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절차”를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으로 한다.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제33조제1항제3호 중 “설치검사일”을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로, “하는 검사”를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기능적·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행위
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실시 항목,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에 따른 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제35조제1항 중 “검사업무”를 “검사업무(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회”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마.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110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3조제1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9호”로, “제8호”를 “제10호”로 한다.

6.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5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된 날부터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이미 경과한 대형시설장비의 시설장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나. (생 략) 다. 지원시설 1) ~ 6) (생 략) 7)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생 략) 라. ~ 바. (생 략) 6. ~ 15. (생 략)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이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 ~ 6) (현행과 같음) 7) ---재생에너지의 생산·저장·유통----------탄소중립---------- 8) (현행과 같음) 라. ~ 바. (현행과 같음) 6. ~ 15. (현행과 같음) 제30조(온실가스 등 감축) ① ----------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만사업자”라 한다)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있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 설>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신 설>	3.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절차, 일시 중지의 사유와 기간----------.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하는 검사(제31조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

	하기 전에 하는 검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 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2(대형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형의 시설장비(이하 "대형시설장비"라 한다)가 제작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형시설장비의 물리적·기능적·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행위

	2. 정밀안전점검: 육안 및 점검기구로 대형시설장비의 내재(內在)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대형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실시 항목,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3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1.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2. (생 략)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제3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3조의2에 따른 대형시설 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검사업무(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⑤ ----------1회 이상----------

있다.	--------.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대형시설장비를 사용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신 설>	마.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 (생 략)	바. (현행 라목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23. ~ 27. (생 략)	23.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9. (생 략)	4. ~ 10. (현행 제3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3조(과태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자
6. ~ 16. (생 략)	8. ~ 18. (현행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7호·제8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1항제9호-제10호---------.